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1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공익법무관 김태영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흥,박민지

변론 종결 2018. 12. 13

판결 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E 전 1,679㎡ 에 관하여 1998. 1.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주시 E 전 1,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62. 5. 10. 자로 원고의 남편인 망'소유자복구'를 변동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망 F는 1978. 1. 14.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위 F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망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2.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1.20.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G은 1978. 7. 14. 사망하였고 현재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B, 2013.4. 23. 사망한 자녀 H의 배우자인 피고 C 및 그 자녀 피고 D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는 1950년대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후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였는데, 망 F가 1976년 다쳐 위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이후부터 배우자인 원고가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콩 및 들깨를 재배하였고, 위 망인의 분묘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20년 이상 납부해 왔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1978. 1. 14.부터 20년이 되는 1998. 1. 15.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 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8. 1.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남편인 망 F가 토지대장에 1962. 5.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망 F가 사망한 후 위 토지 일부에 그의 분묘 1기가 설치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임에도 상당한 기간 산림화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1978. 1. 14.부터 1998.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위 토지 실제경작 사실 여부나 구체적 경작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 F의 분묘 1기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용 창고 등 기타 점유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정황은 달리 없는 점, 위 분묘의 크기는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인 1,679㎡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1. 14.부터 1998. 1. 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조영기